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종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20

제 815 호

1980.12.24

시보

차 례

◎ 규 칙

제 1881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회계관제 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3
제 1882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5
제 218 호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구청과 이하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5
제 219 호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인사, 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14

◎ 고 시

제 41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고시	18
제 417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변경	19

<이면지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18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9
제 419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기간연장)	20
제 420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20
제 42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기간연기)	23
제 42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23
제 423 호 :	보호수지정	24
제 424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24
제 425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25
제 42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26

㉞) 공 고

제 371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26
제 372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27
제 390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27
제 392 호 :	도시계획사업 (평장) 완료공고	28
제 393 호 :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행정처분공고	28
제 72 호 (종로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29
제 16 호 (강서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30
제 75 호 (교육위원회공고) :	교육공무원공노퇴직수당지급공고	30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자 라 영 수 인

1980년 12월 2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81 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관 직 지 정) 제 3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불품관리관, 지출원, 출
납원과 그 분임자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수도국 (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	수도국장
분임징수관	업무과장
경리관	수도국장
분임경리관	경리과장
불품관리관	경리과장
분임불품관리관	각과장
채권(총괄)관리관	수도국장
분임채권관리관	각과장

지출원	경리과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업무과과장계장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경리과경리계당해 업무주무자
물품출납원	경리과관재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주무계장
임시전도자금출 납원	각과주무계장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별도 지정

2. 구청 및 사업소 (이하 "청소"라
한다)

가. 구청

징수관	구청장
구경리관	구청장
구분임징수관	총무과장
분임채권관리관	구청장
불품관리관	구청장
수입금출납원	수도1과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수도1과과장계장
분임지출원	재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재무과경리계장
물품출납원	재무과장
분임물품출납원	수도1, 2과장
임시전도자금출 납원	구청장이 필요계 할때 다라 지정

나. 사업소

징수관	소의장
분임경리관	소의장
불품관리관	소의장

분임재결관리관 소 외 장
 수입금출납원 수납담당계장
 (계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납
 담당주무자)
 분임지출원 경리담당계장
 (계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
 담당주무자)
 세입세출의현금 주무계장 (계제
 출납원 가 없는 사업
 소는 서무주무
 자)
 물품출납원 주무계장 (계제
 가 없는 사업
 소는 서부주무
 자)

임시전도자금출 소외장이 필요
 납원 에 따라 지정

제 5 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제 5 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
 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한다.

1. 예정 금액 3,000 만원 미만의
공사
2. 예정 금액 1,000 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가공
3. 예정 금액 500 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보수, 여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관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
 자금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지시 및 조
 달물품의 조달요청

②구 경리관은 구청의 분임경리관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한다.

1. 예정 금액 300 만원 미만의 공사
2. 예정 금액 100 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가공
3. 예정 금액 50 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보수, 여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관공비, 정보비, 기타법령 또는 조
 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
 자금
5. 단가 계약품목의 납품지시 및 조
 달물품의 조달요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0년 12월 2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82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 조 (공용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①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과 같다.

1. 전설, 급수전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세민이 20 세대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
2. 기설 공용 급수전을 이용하는 주민이 40 세대를 초과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는 지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과 이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0. 12. 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간

◎ 교육위원회규칙제 218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과 이하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과 이하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조제5 항제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제3 조제1 항중 "경리제"를 "경리제, 관재제"로 하고 제2 항중 "경리제장"을 "경리제장, 관재제장"로 제5 항제2 호중 "제3 항제16 호"를 "제4 항제5 호"로 하고 제9 호를 삭제한다.

제3 조제6 중 제10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 호 내지 제20 호를 삭제한다.

10. 불자결약에 관한 사항

제3 조제7 항을 제8 항으로 하고 제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관재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재산 관리
2. 건물구조변경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재해복구 공제회에 관한 사항
4. 철거건물 처분
5. 재산의 차입및 취득
6. 공용부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무허가 건물철거
8. 공공부지 사용허가
9. 국유재산 양수및 차입

<p>10. 보통재산의 관리 11.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p>	<p>부 칙 이 규칙은 81.1.1 시행한다.</p>
<p>신 · 구 대 조 표</p>	
<p>구 (현 행)</p>	<p>신 (개 정)</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 과이하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교육위원회 교육구청의 과 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무과) ①학무과의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계, 중등교육계, 사회교육계, 보건교육 계, 학사계를 둔다. ②초등교육계장, 중등교육계장, 보 건교육계장은 장학사로, 사회교육 계장,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계는 초등교육(학명전 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 및 연구학교 지도 3. 시청각교육 및 기재에 관한 사항 4. 학교문고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교육행사 9. 학교내외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교원인사, 제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과 동 제1조(목적) 과 동 제2조(학무과) 과 동</p>

구(원 행)	신(개 정)
<p>④중등교육제는 중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진학 및 연구학교 지도 3. 시청각 교육기제에 관한 사항 4. 학교문고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6. 학생 생활지도 7. 교육행사 8. (삭제) 9. (삭제) 10.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11.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2. 교원의 인사, 재교육 및 복부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학생동원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도감독 16. 기타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p>⑤사회교육제는 사회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강습소 설립계획 및 지도감독 2. 시설강습소의 목적, 명칭, 위치, 수칙 및 설립자 명의 변경승인 3. 시설도서실 지도감독 4. 청소년 직업학교 지도감독 5.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지도감독 	

구(현 행)	신(개 정)
<p>6. 공·사립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인사관리</p> <p>7.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부칙,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과 임원 취해임 및 지도감독가,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에 관한 사항</p> <p>나.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p> <p>다. 이사회 소집승인에 관한 사항</p> <p>라. 임원해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p> <p>8. 신설</p> <p>③보건체육제는 보건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 체육교사, 양호교사, 인사, 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영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장 관리지도에 관한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교보건 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7. 학생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조직 및 지도감독 9. 학생의 국내체육대회 출장승인 10. 체육복기학교 지도감독 	<p>8.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p>

구(현 행)	신(개 정)
<p>11.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p> <p>⑦ 학사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중학교장은 제외)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원임용 및 정계에 관한 사항 2.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국민저축에 관한 사항 3. 국민학교, 중학교 교과서 공급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자격 검정고시 6.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7. 국민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재증명 발급 <p>제 3 조 (관리과) ① 관리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관리계, 기획감사계, <u>경리계</u>, 시설계를 둔다.</p> <p>② 서무계장, 관리계장, 기획감사계장, <u>경리계장</u>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시설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시설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p> <p>③ 서무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서무 및 관인관수 2. 문서수발통제 및 보존 3. 각종회의 또는 행사에 관한 사항 	<p>제 3 조 (관리과) ① ----- ----- -----<u>경리계</u>·<u>관재계</u>----- ----- -----<u>경리계장</u>·<u>관재계장</u>----- ----- ③ <u>좌동</u></p>

구 (현 행)	신 (개 정)
<p>4 . 보안, 민원에 관한 사항</p> <p>5 . 법령 및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p> <p>6 . 공무원의 인사 (교원은 제외한다) 및 부무교육에 관한 사항</p> <p>7 . 출납 공무원의 임면</p> <p>8 . 민방위훈련과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p> <p>9 . 청사 및 차량관리</p> <p>10 .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p> <p>11 . 기타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④ 관리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p> <p>2 . 자율적 경비실험실습비 및 육성회비 관리</p> <p>3 . 학급편제 및 수용계획 수립</p> <p>4 . 의무취학과 학구제 운영 및 학군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5 .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설립폐지</p> <p>6 . 제 5호의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p> <p>7 . 제 5호의 학교의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p> <p>8 . 제 6호의 법인의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 임원취·해임인가</p> <p>9 . 제 5호의 사립 각급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p>	<p>④ 과동</p>

구 (원 행)	신 (개 정)
⑤ 기획감사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 - -
1. 서정세신에 관한 사항	1. 과 동
2. 제 3 항제 16 호의 학교의 감사업무	2. 제 4 항제 5 호 - - - - -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과 동
4. 지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과 동
5. 비위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	5. 과 동
6. 각급학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6. 과 동
7.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부서에 관한 사항	7. 과 동
8. 통계에 관한 사항	8. 과 동
9.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9. 과 동
10. 상급관서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10. 과 동
⑥ 경리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과 동
1.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에 관한 사항	2. 과 동
3. 과오납 반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과 동
4. 수입증지 출납에 관한 사항	4. 과 동
5. 대여장학금 상환	5. 과 동
6. 학생복지시설조성기금수납에 관한 사항	6. 과 동

구 (현 행)	신 (개 정)
7. 물품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7. 과 동
8.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보관	8. 과 동
9. 계약에 관한 사항	9. 과 동
10. 교육재산관리	10.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1. 건물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철거 건물 처분	13. 삭 제
14. 재산의 차입 및 취득	14. 삭 제
15. 공공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무허가건물 철거	16. 삭 제
17. 공공용지 점용허가	17. 삭 제
18.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18. 삭 제
19. 보통재산의 관리	19. 삭 제
20.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20. 삭 제
① <u>신 설</u>	① 판재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교육용 재산관리</u>
	2. <u>건물구조변경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u>
	3. <u>학교 재해복구 공제회에 관한 사항</u>
	4. <u>철거 건물 처분</u>
	5. <u>재산의 차입 및 취득</u>
	6. <u>공공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u>
	7. <u>무허가 건물 철거</u>
	8. <u>공공용지 사용허가</u>
	9. <u>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u>
	10. <u>보통재산의 관리</u>

구 (천 령)	신 (개 정)
<p>① 시설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진척계획수립 2.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의 집행 3. 토목설비의 시설 및 감독 4. 육성회 시설사업의 영사지도 및 감독 5. 관급 자재수급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1. 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10. 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 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7. 1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2.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1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 1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2. 2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11.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p> <p>① 과 동</p> <p>부 칙 (1973. 1. 25)</p> <p>과 동</p> <p>부 칙 (1973. 10. 6)</p> <p>과 동</p> <p>부 칙 (1974. 3. 5)</p> <p>과 동</p> <p>부 칙 (1977. 7. 11)</p> <p>과 동</p> <p>부 칙 (1979. 2. 13)</p> <p>과 동</p> <p>부 칙 (1979. 3. 16)</p> <p>과 동</p> <p>부 칙 (1979. 7. 12)</p> <p>과 동</p> <p>부 칙 (1979. 12. 29)</p> <p>과 동</p> <p>부 칙 (1980. 12. .)</p> <p>이 규칙은 81.1.1 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0.12.2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국감이장갑인

◎ 교육위원회규칙제 219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3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제 24 호서식)의 교부토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급내지 3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 별지 제 23 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 서식

2. 4급을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의 임명장 : 별지제 23-3 호 서식

나. 승진의 임명장 : 별지제 23 호 서식

다.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 서식

3. 4급을류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 별지제 23-3 호 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 서식

③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④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시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⑤소속공무원의 국내출신·국의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⑥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 해제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 36 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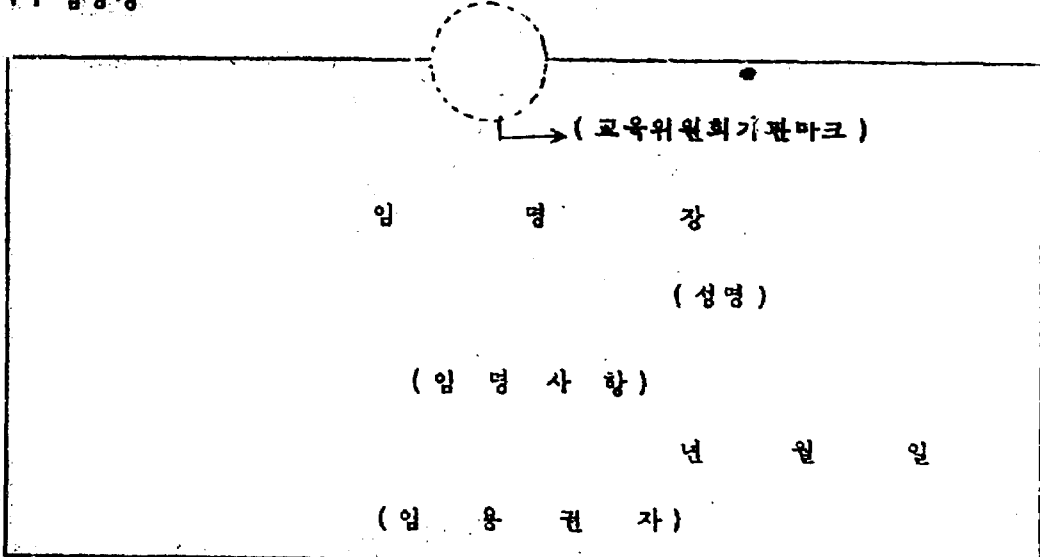
(별지 제 23 호서식) 내지 (별지 제 23-3 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23 호 서식] 2 급내지 3 급 임명장 및 4 급감류의 승진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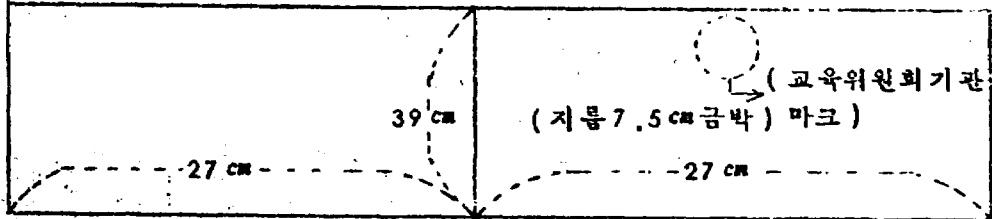
1.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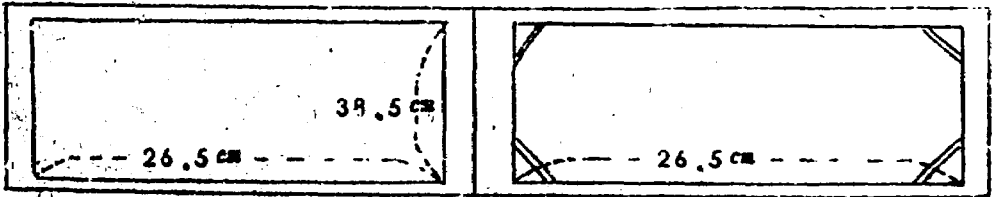
260mm X 380mm 인쇄용지 (특급) 210g/㎡

2. 표지

가. 외면



나. 내면



다. 재질

표지는 두께 3mm의 판지에 외면은 흑청색 포크로스로 내면은 백색 그라비아지로 인쇄한다.

[별지 제 23-2 호서식] 전보임용장

(교육위원회기관마크)

임 용 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195mm X 275mm인쇄용지 (복합) 210mg/㎡

[별지 제 23-3 호서식] 4급갑류의 정규공무원임용 및 4급을류이하의 임명장

(교육위원회기관마크)

임 명 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240mm X 340mm인쇄용지 (복합) 210mg/㎡

현행	개정
<p>제 32 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p> <p>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 (시보를 제외한다)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 (별지 제 23 호서식)을 수여한다.</p> <p>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다.</p> <p>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강입·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부직·호봉제사정·승급·전출·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별지제 24 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당직명령은 최보로 통지할 수 있다.</p> <p>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제 36 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 32 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p> <p>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 (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p> <p>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3 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4 급을류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 (별지제 24 호서식)의 교부로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급내지 3 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 별지제 23 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서식 2. 4 급장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규공무원 임용의 임명장 : 별지제 23-3 호서식 나. 승진의 임명장 : 별지제 23 호서식 다. 전보의 임용장 : 별지제 23-2 호서식

현	행	개	정
		<p>3. 4급을류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 임용·승진의 임명장: 별지제 23-3 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제 23-2 호서식</p> <p>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④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부직·호봉제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문 교부한다. ⑤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직위해제통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별지제 36 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p>고 시</p> </div>		<p>설부고사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12. 24 서울특별시 장</p>	
<p>◎ 서울특별시고시제 416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고시</p> <p>1. 건설부 고시제 214 호(78.8.2)로 결정권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제 14 조와 건</p>			

○ 도로실효주서							
구분	등급	번호	목원	연장	시점	중점	비고
실효	광로	67	40	1,700	용산동2가	한남동(광장70)	
"	"	68	40	3,000	한남동(광장기)	청계천7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417 호</p> <p>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허가변경</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01(79.3.2) 호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508(79.12.11) 호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허가한 마포구 석산동 360 번지의 47 필지(57,752㎡)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79.12.10)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기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12.24. 서울특별시장</p>				<p>○ 다 음(변경사항)</p> <p>1) 당초사업기간: 1979.3.2-1980.12.31</p> <p>2) 변경사업기간: 1979.3.2-1981.12.31</p> <p>○ 서울특별시고시제 418 호</p> <p>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변경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을 다음과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인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12.24. 서울특별시장</p>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공용의청사	동작구노랑진동 47-2 부근	9,180 ㎡				
변경	"	"	8,956 ㎡	감 224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19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변경허가 (기간연장)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50 호 (78.12.15.) 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독산동
668 - 35

나. 명 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다. 면 적 : 2,514 평

라. 사업시행자 : 삼신교총회
합귀한

마. 사업기간 : 당초 : 78.12.15-
80.12.20.

변경 : 78.12.15-
81.6.30.

◎서울특별시고시제 420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
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33 호 (78.7.5) 로 결정되고 동고시제 346 호 (78.7.11) 로 지적승인된 강남구 양재동 526 일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인 관덕마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취락구조 기획실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양재동 526 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규모 (면적) : 4,776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 . 설명 : 강남구
양재동 498 번지
취락구조개선 사업
추진위원장 박태성

<p>마. 사합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p> <p>1) 착수예정일 : 시행허가즉시</p> <p>2) 준공예정일 : 1981. 6.30.</p> <p>바. 수용도는 사용합로지의 소재지 지목,지적</p>	<p>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p>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p>
---	--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1	강남구양재동	526-1	대	46.3	미등기		
2	"	-4	"	40.8	"		
3	"	-7	"	21.2	"		
4	"	-8	"	67.4	"		
5	"	-10	임야	76.2	"		
6	"	-11	"	83.5	"		
7	"	-12	"	128.9	"		
8	"	-13	"	130.7	"		
9	"	-14	"	128.9	"		
10	"	-15	"	148.8	"		
11	"	-16	"	150.6	"		
12	"	-17	"	121.6	"		
13	"	-19	"	114.3	"		
14	"	-20	"	94.4	"		
15	"	-21	"	111.3	"		
16	"	-22	"	108.9	"		
17	"	-23	"	116.2	"		
18	"	-25	"	59	"		
19	"	-26	"	108.9	"		
20	"	-27	"	108.9	"		
21	"	-28	"	83.5	"		
22	"	-29	"	125.2	"		
23	"	-30	"	103.5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24	강남구양재동	526-31	임야	107.1 평	미등기		
25	"	-32	"	143.4	"		
26	"	-33	"	105.3	"		
27	"	-34	"	36.3	"		
28	"	-35	"	10.9	"		
29	"	-37	"	9.1	"		
30	"	-38	"	10.9	"		
31	"	-39	"	12.7	"		
32	"	-40	"	16.3	"		
33	"	-41	"	25.4	"		
34	"	-42	"	0.6	"		
35	"	-43	"	114.3	"		
36	"	-44	"	137.9	"		
37	"	-45	"	210.5	"		
38	"	-46	"	181.5	"		
39	"	-47	"	199.7	"		
40	"	-48	"	136.1	"		
41	"	-49	"	136.1	"		
42	"	-50	"	125.2	"		
43	"	-51	"	145.2	"		
44	"	-52	"	152.5	"		
45	"	-53	"	150.6	"		
46	"	-54	"	319.4	"		
	합	계		4,776 평			

○ 서울특별시고시제 421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변경허가(기지연기)

1. 서울특별시고시제 175 호(80.5.26)로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허가된 강남구 대치동 623,624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변경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2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대치동 623,624 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면적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대지 1,324.5평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952.15평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강남구 대치동 623 의림상가(주) 선병실
 - 5) 사업의 학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건

- 가. 착수예정일 : 1980.5
 - 나. 준공예정일 : 1980.12.31
- 변경 후
- 가. 착수예정일 : 변경없음
 - 나. 준공예정일 : 1981.5.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의의 권리 명세 : 생략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고시제 4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변경)

1. 건설부 고시 제 313 호(78.10.20)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79.6.8)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한 원효대교 건설공사 사업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 위치 : 용산구 원효로 4가 부근~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국교 및 시범아파트 주변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원효대교 건설공사
- 3. 사업규모 : 복단 : ①램프 B=7-12m L=1,034m ②녹지대 3,281평 ③도로 21,779평
남단 : ①램프 B=10.8m~43m L=538m ②녹지대 143평 ③도로 3,488평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종전인가일 : 인가일~80.12.31 변경 : 인가일~81.10.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서울특별시고시 249호 79.6.8과 동일함)

서울특별시고시제 423 호

보호수지정

산림법 제 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거수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0.12.

서울특별시

- 1. 신규지정 수록
-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노거수 제 113 호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12번지
- 3. 소유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방학동 남궁환
- 4. 관리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99 박강원
- 5.

수종	수령	수고	통고직경
느티나무	200년	15.0	1.5m
- 6. 지정 및 해제년월일 : 1980.12 지정 및 해제기관 : 서울특별시

1980.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24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 호 (79.2.6) 로 도시계획시설 (소매시장) 결정 및 동고시 제 75 호 (79.2.16) 로 지적 승인된 동대문구 장안동 147-11 번지 토지의 6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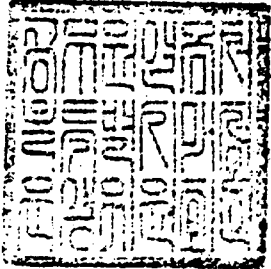

<p>임사함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12. 서울특별시</p> <p>가. 사업시행지: 동대문구 장안동 147-11번지의 6필지</p> <p>나. 사업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풍안시장)</p> <p>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p> <p>1) 면적: 1,184 평방미터</p> <p>2) 규모: 판매장 및 관리시설 (건물 2동 1,213.69 평방미터 - 지하층 306.13 평방미터, 1층 453.78 평방미터, 2층 453.78 평방미터)</p> <p>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동대문구 장안동 147-14 풍년실업(주) 대표이사 김대욱</p> <p>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p> <p>1) 착수일: 80.12.26</p> <p>2) 준공일: 81. 1.20</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철부(생략)</p> <p>사. 사업계획서 및 계획평면도: 김부(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425 호</p> <p>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p> <p>1. 건설부고시 제 3 호 (75.1.13) 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암사토 지구획 정리지구내 토지중 시장부지로 결정된바 있는 47 구획 (이하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시행허가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12.27 서울특별시</p> <p>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암사토 지구획 정리지구 47 구획</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p>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p> <p>명칭: 현대종합시장(소매시장)</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p> <p>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7 보력</p> <p>성명: 풍암상사수식회사 공동 대표 권단현, 김범수</p> <p>라. 사업의 규모</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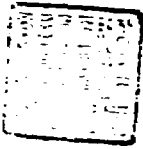
<p>지적 : 1,000 평 건축연면적 : 3,816.38 ㎡ (지하 585.60 ㎡ 1층 1,235.73 ㎡ 2층 1,624.06 ㎡ 3층 346.48 ㎡ 옥탑 24.51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년월일 : 사업시행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예정일 : 착수일부터 1년 이내 바. 사용할 토지명세 :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자 위와 같음. 사.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 면생략) 아.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6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38 호 (78.10)</p> <p>마. 사업기간</p>	<p>13)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 사업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의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 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0.12.27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지행지 : 구로구 오류동 199-1 나.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다. 면적 : 1,225.5 평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 오류동 199-1 재단법인 보건학원이사장 김 호 기</p>
---	--

당 초		변 경	
착 공	준공예정일	착 공	준공예정일
1979. 7. 9	1980.12.31	1979. 7. 9	1981. 6.30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371 호</p> <p>공인개각사불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80.12.8 서울특별시 장</p>
---	---

<p>1. 공 인 명 : 동대문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2. 사용개시일 : 1980.12.15 3. 공인의인명 : 다음</p>		<p>공 인 의 인 명</p>	
<p>공 인 의 인 명</p>		<p>인</p>	 
<p>인</p>	 	<p>영</p>	<p>공인명</p> <p>구로경찰서장인및개인</p>
<p>공인명</p>	<p>동대문구청장인및개인 (호적병사용)</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0 호</p> <p>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80.12.13.</p> <p>서울특별시장</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72 호</p> <p>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승인하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80.12.8.</p> <p>서울특별시장</p> <p>1. 공 인 명 : 구로경찰서장인 2. 사용개시일 : 1980.12.15 3. 공인의인명 : 다음</p>		<p>1. 공 인 명 :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위원회인 2. 사용개시일 : 1980.12.30 3. 공인의인명 : 다음</p>	

공 인 의 인 영		
인 영		
공 인 영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위원회인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제인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광장) 완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357 호 (80.10.28) 로 신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제 85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2. 본 공사완료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12.27 서울특별시 장</p> <p>1. 사업시행지 : 강동구천호동 67-5 앞 광장일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가) 종류 : 도시계획사업 (광장)</p> <p>나) 명칭 : 천호사거리가각정비공사</p> <p>3. 사업시행면적</p> <p>가) 아스팔트포장 A = 47.6a</p> <p>나) 보도부력 A = 42.9a</p> <p>다) 하수도시설 L = 555m</p> <p>라) 녹지대 4개소</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p> <p>5. 사업시행기간 : 1980. 8.20 - 1980.12. 3</p> <p>6. 준공도면 : 생략</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3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행정처분공고</p> <p>소방법제 3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규칙제 75 조 2 규정에 의거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12. . . . 서울특별시 장</p>		

다							
금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허가번호	및일자	제 조 금 국	영업정지사유	영업정지 기간
(주) 일영전자	영등포구 도림동 181-1	정귀탁	서울시제 1-6호	80. 7. 31.	유도동 자동 화재 속보기	소방법제 37조 제 1항및동법 시행규칙제 75조 외 2 규정위반	81. 1. 5 ~ 2. 4
<p>◎ 종로구 공고제 72 호</p> <p>공인신조공고</p> <p>주차장시설비 일반회제가 특별회계 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금 및 분임 수입금출납원칙인용 서울특별시공인</p>				<p>조해제 6조에 의거 신조하엿기 와 같이 공고함.</p> <p>종 로 구 공 고</p> <p>1. 사용일자 : 1981. 1. 1.</p> <p>2. 직인의 인영 : 다음</p>			
공 인 의 인 명							
인							
명							
공 인 명	종로구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분임수입금출납원인			

<p>◎ 강서구공고제 16 호</p> <p>공인개각공고</p> <p>서울특별시공인조해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월제 1 등장직인 을 개각하였기 동조해제 9 조에 의거</p>	<p>공고한다.</p> <p>1. 개각사용년월일 : 1980.12.26 09:00</p> <p>2. 개각원직인 : 신월 1 등장인</p> <p>3. 공인개각인영 : 다음 1980.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p>
<p>인</p>	<p>영 부</p>
<p>◎ 서울교위공고제 75 호</p> <p>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p> <p>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공로 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1. 수당지급대상자 공립초, 중학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자.</p>	<p>가. 연령</p> <p>1) 60 세 이상</p> <p>2) 신체, 정신상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 세 이상</p> <p>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통산)</p> <p>1) 30 년 이상</p> <p>2)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 년 이상</p> <p>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자</p> <p>나) 재직중 작급기관의 장의</p>



<p>표창물 받은자 다. 재직중 시, 도단위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물 받은자.</p> <p>2. 수당지급일 : 1981년 2월 28일</p> <p>3. 신청기간 : 1981.1.12 - 24 (단, 고등학교는 22까지)</p> <p>4. 신청절차 소정신청서에 건강진단서등을 구 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 독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p> <p>5. 지급액 기순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에 지급배수틀 곱한</p>	<p>금액</p> <p>6. 지급절차 가. 대상자결정통지 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 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통지한다.</p> <p>나. 수당지급장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p> <p>7. 기타사항 다.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 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것</p> <p style="text-align: right;">1980.12.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p>
---	--